

세계사적 차원에서 헌법재판의 역사를 살펴보면, 1803년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s. Madison) 판결 사건이다. 당시 독립된 건물도 없는 연방의회 건물 한 공간에서 재판하던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의회의 법률을 위한 무효로 판결하였다. 헌법심사는 애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1920)가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최초 설립되어 규범 통제권을 보유했고, 이어서 미국 연방대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1951)가 정당한 판례로 세계 헌법재판 위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헌법은 어떠한가! 1987년 6월항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1988년 독립된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정착했다. 헌법 조항 해석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심판하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 여부, 그리고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는 기능을 해왔다.

헌법을 수호하면서 헌법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시대 흐름에 역기능도 곳곳에 새어 나왔다. 그것이 2003년도 수도 이전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불문 헌법적 성격으로 판결하였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결했다.

또 헌재의 대상에 따라 고무줄 같은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헌재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 아니다”

표현은 국민 외면

해석이다. 그동안 헌재 판결을 보면 재판관의 관점과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 판결과 법리 해석이다. “헌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궤변(詭辯) 같은 판결이다.

최근 헌재 판결을 보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국회는 안동완 검사가 형법 123조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한 검찰청법,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으며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재에 소추하였다.

그 결과 헌재는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판결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윤석열 정권 기간 중 양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30건으로 헌재는 거의 기각, 각하시켰다.

일반 국민은 헌재의 이러한 판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약자나 평범한 사람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큰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위법해도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재판관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버스회사의 운전기사해임은 공무원 파면과 비슷한데, 버스 운전기사가 커피 빼먹으려고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당했는데, 고위공무원에게 웬만한 것은 거의 탄핵 기각이다.

헌재 재판관의 입장에서 사소한 범죄의 사건을 나름대로 가상의 판결을 해본다.

범죄행위는 사기가 맞으나 중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는 아니다.

구타행위는 범죄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마약은 했으나 자의가 아니므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만취했으나 사고가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볼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중앙선을 넘었으나 충돌사고가 없으므로 중대한 사건으로 볼 사항이 아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음력 3월 12일)

48년생편안한승부도 강하게해야한다60년생스치기는 인연운명임을 알아차려72년생백기 들어항복 마침표를 찍어내자84년생책인지는 자서관심의 시작이다96년생힘들다도망가면 꼬리가 달려간다.

51년생물과 기름이어도 어깨동무해보자63년생짐작 못한 행운 만배가 달려간다75년생사랑인지 애정인지 선을 그어내자87년생새상이란 공부 열심히 해야한다99년생이름다운 청춘 꿈을 향해달려가자.

54년생사소한변화에 민감함을 가져보자66년생답 없는숙제 경혐으로 알아내자78년생부자 된 살림살이 미소가 날려준다90년생은근한 신경전 반드시 이겨내자02년생주인공이 아니다. 뒤에서 지켜주자.

57년생나쁜 조건이어도 거래에 응해주자69년생숨이 탁까지지도한 우물을 파보자81년생성공이라는 목표 눈으로 보여진다93년생슬픔은 그만 전화위복이 되어준다05년생청춘과 격려에 보란듯이 답해보자.

49년생수지맞은장사담기지 않아진다61년생미루고 있는 계획앞으로 당겨보자73년생구름 위를 걷듯 황홀함에 빠져보자85년생오라는 곳없어도 비범게움직이자97년생큰돈을아껴도 건강을 담아보자.

52년생근거 없는 허세 미움으로 변해진다64년생땀 흘린 보람 평안함에 빠져보자76년생천국 부림치 않은 호사를 누리보자88년생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자00년생버려질수 있다. 위기감을 가져보자.

55년생급하면 손해 기다리면 복이 온다67년생잠시 했던 방황 제자리로 돌아가자79년생부러질수 있어도 휘어지지 마라91년생의심 없는 열정 꿈을 향해 달려가자03년생노동의 강도는 거칠고 힘들어야한다.

56년생애정 표현은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70년생하하호호재미에피곤도 달아난다82년생동 돌린 사이와 화해를 서두르자94년생단아하고 고운 모습만 보여주자06년생영력없는 철부지 편지지 들어온다.

50년생비어있는 가슴 파랑새가 날아온다62년생초라한 이익보다 신뢰를 얻어내자74년생후회도 미련도 버림에 살아내자86년생첫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98년생아픈 상처들은 자부심이 되어간다.

53년생다시 찾은 청춘 전성기로 돌아가자65년생행복하다싶은 표정이 그려진다77년생없던 힘도 실라는 대답을 들어보자89년생숨소리조차 절실히을 지켜내자01년생고생은 끝나고 꽃길을 걸어보자.

56년생무조건 찬성 한식구를 감싸주자68년생금영이 같은 7회 욕심을 채워보자80년생한참이나 길었던 부진이 지나간다92년생남인과 담을 쌓고 현실과 타협하자04년생가뭄은 상생세 구름까지 몰아간다.

47년생가뭄새는 안 될 달 속으로 삼켜내자59년생빛으로 남은 고마움을 감아내자71년생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에 나서보자83년생민간이 스쳐가는 축하를 받아보자95년생홍다하는 유혹도 모른 척해야한다.

기고

허위 112신고, 공공재를 낭비하는 범죄행위

112허위신고 근절로 성숙한 112신고 문화 정착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조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남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가오는 4월 1일은 만우절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보내는 날이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순간의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범죄 피해를 당해 긴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2신고는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수단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기대해본다.

구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황민재 경감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충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 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 한국도로공사

500 경부고속도로 50주년